

01

장애란 무엇일까요?

- '장애'는 진화하는 개념이며, 손상을 가진 사람과 태도적, 환경적 장벽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서 유래합니다.(사회적 모델의 관점 반영)
- 장애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으며 나라마다 장애의 범위가 다릅니다.

02

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.

-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%에 해당합니다.
※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등록현황, 보건복지부
- 장애 발생 원인의 73.5%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도 장애인이 될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.
※ 201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, 한국장애인고용공단
-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을 장애인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해석하며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는 심리사회적 공감(장애감수성)이 필요합니다.

03

우리나라의 장애 유형

-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유형은 15개로 분류됩니다.

I. 신체적 장애

지체 장애	절단장애, 관절장애, 지체기능장애, 변형 등의 장애, 척수장애 등 몸통과 팔다리에 불편을 겪는 장애 ▶ 면접이나 회의를 준비할 때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뇌병변 장애	뇌성마비, 뇌졸중, 뇌의 손상 등으로 인해 보행장애, 일상생활동작의 제한 등이 생기는 복합적인 장애 ▶ 말을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다시 한 번 이야기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고 함께 걸을 때는 속도에 맞춰 걷습니다.
시각 장애	빛이 눈으로 들어와 뇌까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시력장애, 시야결손장애 ▶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.
청각 장애	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청력장애 또는 평형기능장애 ▶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.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(구화, 필담 등)
언어 장애	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인한 언어장애, 음성장애, 구어장애 ▶ 언어장애인의 대화 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대화를 할 때 얼굴,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.

안면 장애

안면부의 추상, 함몰,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
▶ 주변의 시선이 불편하여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,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들에게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갑니다.

신장 장애

신장 기능 이상(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를 포함)
▶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경우 투석시간, 투석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.

심장 장애

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
▶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.

간 장애

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간 기능 이상
▶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수면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호흡기 장애

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·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
▶ 건조한 환경이나 자극적인 가스,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작업환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장루·요루장애

배변과 배뇨기능의 장애로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받아 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
▶ 탈의가 잦은 근무환경, 공개적으로 탈의를 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뇌전증 장애

뇌신경세포가 일시적 이상을 일으켜 의식 소실, 발작 등과 같은 증상이 반복적이고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
▶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.

II. 정신적 장애

지적 장애

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경우(지능지수와 사회성 숙지수가 70 이하인 경우)
▶ 인지적인 능력이 낮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알고 표현할 수 있으므로 지적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. 또한 나이에 맞는 호칭을 사용하고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.

자폐성 장애

일상·사회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언어·신체표현·자기조절·사회적응 가능 장애
▶ 낮은 장소, 낮은 사람,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.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예행연습이 필요합니다.

정신 장애

지속적인 조현병, 분열형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, 반복성우울장애로 인해 감정조절·행동·사고 가능 및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
▶ 근무 중에도 자연스럽게 약을 복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줍니다. 중간 중간 짧은 휴식이 도움이 됩니다.

- 장애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수많은 특성 중 하나입니다. 동일한 장애유형이라고 해도 개별사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-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.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.

04

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

- 신체적, 정신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6차 UN총회(2006.12.13.)에서 'UN장애인권리협약'이 채택되었습니다.
- 여성장애인과 장애아동의 권리보호,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, 교육권과 건강권 및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 규정
- 우리나라는 2007년 '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'을 제정하였습니다.
-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 보장
- 비장애인과 동등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

▶ **정당한 편의란?**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나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게 만든 기계나, 가구, 시설 등을 말한다.

- 그 외 '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,' (1998년)을 통해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.

- 장애인의 '인권', '기본적인 자유'가 침해당한다면?

▶ **권리구제 신청** 피해사례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▷ (국가인권위원회) 시정권고 및 법무부장관에 통보 ▷ 시정권고 불이행 시 ▷ (법무부장관) 시정명령 발동 ▷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
▶ **고충처리위원회 신고** 피해사례 발생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 ▷ (고충처리위원) 10일 이내 조치 및 결과 통보

※ 30명 이상 사업장 '고충처리위원 필수' (『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』제26조)



